

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

- 1. 9.(화)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 국회 본회의 통과,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 종합 정책 기능 강화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1월 9일(화)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세계관광기구(UNWTO, '23)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% 이상으로,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 우리나라도 '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%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, 서핑·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·증대되는 추세이다.

해양수산부는 그간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 대회,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. 하지만 해수욕장, 수중레저, 수상레저, 해양치유,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 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,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.

이에, 국회에서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*되어 협의가 진행되었으며,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하고, 본격적으로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 제정을 추진하였다.

* 하영제 의원(2021. 5. 14.발의), 주철현 의원(2022. 8. 9.발의), 박형수 의원(2023. 1. 9.발의)

이번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 제정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한편,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여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.

또한, ▲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, ▲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, ▲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·관리, ▲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, ▲민간기관 및

단체의 육성·지원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. 해양수산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,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『해양레저관광진흥법』의 제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.”라며, “앞으로 해양치유, 마리나 비즈센터, 해양레저관광 체험시설 등 기존사업과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,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	책임자	과 장	권영규 (044-200-5250)
		담당자	서기관	허중호 (044-200-5251)
	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규제팀	책임자	과 장	오영곤 (02-3788-3440)
		담당자	전문위원	이봉길 (02-3788-3574)



가. 제정배경

□ 세계관광기구(UNWTO)는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50% 이상으로 분석(UNWTO, '23)하고 있으며,

○ 세계 해양관광은 '22~'30년간 연평균 5.7% 성장하여 '30년 시장 규모가 5조 달러가 되는 등 고성장을 예측(GlobeNewswire, 2023)

* 국내 연안지역 방문자는 19억 9천만명으로 우리나라 전국 방문자 28억명의 71% ('22, 관광데이터랩)

** 우리나라 연안지역 해양관광 소비액 ('19) 29.9조원 → ('20) 28.6조원 → ('21) 31.3조원 → '22년 37.4조원에 달하는 등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산업(KMI 동향분석, '23)

□ 해양수산부는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

○ 해양레저활동, 해양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마리나, 크루즈, 해양치유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·노력 중

□ 그러나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, 산업의 잠재력 등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근거법조차 없는 실정

○ 추진 중인 정책사업*들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며,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법정 종합계획도 부재

* 실태조사·통계, 해양레저관광거점, 마리나비즈센터, 우수해양관광상품 지원, 해양 스포츠대회·행사 지원 등

⇒ 관광분야 중 비중이 높고 해양의 특수성 고려가 필요한 해양레저 관광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법 제정 추진

나. 주요 추진경위

- 「해양관광진흥법」 등 3개 법안*(‘21~’23)이 의원입법 발의
 - *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‘21.5.14, 하영제의원 등), 해양관광진흥법(‘22.8.9, 주철현의원 등),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(‘23.1.9, 박형수의원 등)
 - 입법공청회, 규제혁신추진단 주관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지속 협의
- 법사위 전체회의(‘24.1.8), 본회의(‘24.1.9) 의결

다. 조문 주요내용

- ① 해양레저관광자원 관리·보전,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지원,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 목적(안 제1조)
- ② 해양레저관광, 해양레저관광자원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③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, 국민의 해양레저관광 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(안 제3조)
- ④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등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(안 제4조)
- ⑤ 해양레저관광 진흥 종합계획과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(안 제5조)
- ⑥ 해양레저관광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(안 제6조)
- ⑦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·관리(안 제7조)
- ⑧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,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·보조를 문체부에 요청 가능(안 제8조)
- ⑨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 및 지원(안 제9조)
- ⑩ 유치원, 초·중·고학교의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(안 제10조)
- ⑪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·교육·산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관기관 및 단체의 육성·지원(안 제11조)
- ⑫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근거 및 사업범위 등(안 제12조)
- ⑬ 국회보고 의무(안 제14조)
- ⑭ 시행일(공포 후 1년)(안 부칙)